

온타리오 아동급여 (Ontario Child Benefit)

온타리오 아동급여는 저소득층의 자녀 부양을 돕기 위한 주정부 제도입니다. 자녀가 있고 저소득층에 속한다면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온타리오 아동급여 수혜 자격 점검표

다음과 같은 경우, 가구소득에 따라 온타리오 아동급여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:

- 18 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
- 온타리오 주 주민이고
- 본인 및 배우자(또는 사실혼자) 모두 납세신고서를 제출했고
- 연방정부의 캐나다 자녀세금혜택(Canada Child Tax Benefit)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

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나?

온타리오 아동급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본인 및 배우자(또는 사실혼자) 모두 연간 납세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. 급여액은 연간 납세신고서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또한 연방정부의 캐나다 자녀세금혜택에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급여액이 얼마나 되나?

수혜 자격이 있을 경우, 18 세 미만 자녀의 수와 캐나다 국세청(Canada Revenue Agency)에서 산정한 가구 순소득에 의해 급여액이 결정됩니다.

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 있고 가구 순소득이 \$25,000 일 경우, 2008 년 7 월부터 2009 년 6 월까지 매월 약 \$67 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11 년 7 월에 이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면 매월 약 \$150 로 증액됩니다.

온타리오 아동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십니까?

웹사이트 www.ontario.ca/childbenefit 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온타리오 아동급여에 대한 일반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무료전화로 문의하십시오:

1-866-821-7770

TTY(청각장애이용 문자전화) 1-800-387-5559

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은 아래 무료전화로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:

1-800-387-1193.

TTY(청각장애이용 문자전화) 1-800-665-0354

기타 자료:

납세 신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

납세 신고 패키지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1-800-959-8281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.cra.gc.ca/forms 를 방문하여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캐나다 자녀세금혜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?

아직 연방정부의 캐나다 자녀세금혜택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1-800-387-1193 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.cra-arc.gc.ca/benefits/cctb 를 방문하여 캐나다 국세청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.